

결 정

2018 - 2035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
부산일보 발행인 안 병 길

주 문

부산일보 2018년 2월 5일자 21면 「소원성취, 만사형통 이루어진다는 만년스님
황금복돼지」 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‘주의’ 조치한다.

이 유

부산일보의 적시 광고는 부자가 되게 하거나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황금 복돼지
그림을 선전하고 있다.

광고는 어느 스님이 그려주는 황금색 복돼지가 시험합격, 매매, 취업, 사업번창,
입찰 등 여러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고 주장했다.

그러나 위 광고들의 내용은 오늘날의 상식과 과학으로 설명하기 어렵다. 그런
데도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인 양 광고하며 금전을 피하는 것은 흑세무민의 결과를
초래할 수 있다.

이는 ‘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’ 내용의 광고 게재를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
강에 어긋나며,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, 2,
4,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(1), 4의 (1)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
같이 결정한다.

2018년 3월 14일

한 국 신 문 윤 리 위 원 회

위 원 장 김 용 담 김용담

위 원 정 송 호 정

장 명 국	장 명 국
박 재 현	박재현
장 인 철	장인철
김 규 식	김규식
강 희	강희
하 윤 수	하윤수
김 영 모	김영모
박 미 경	박미경

○ 적용 조항

신문광고윤리강령 1 신문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.

신문광고윤리강령 2 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된다.

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는 그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켜서는 안된다.

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(1)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것

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(1)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, 오도하는 내용